

2026년 빈집정비공사(1차)

건 축 공 사 시 방 서

2026. 03.

인천광역시 중구

- ※ 본 계약은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5조제1항에 의거하여 2026년 7월 1일자로 계약상대자가 변경되어 '제물포구'로 승계되는 계약입니다.
- ※ 분구 추진과 관련하여 과업물량 변경으로 인한 변경계약(계약 금액 조정 등)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제 1 장 철거공사

1. 공 사 명 : 2026년 빈집정비공사(1차)
2.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45일간
3. 대상지 개요

연 번	소 재 지	대지면적(㎡)	비 고
1	인천광역시 중구 신흥동3가 12-59	82.30	철거/쉽터조성
2	인천광역시 중구 송월동1가 4-42	95.80	철거/쉽터조성
3	인천광역시 중구 전동 34-19	69.40	철거
4			
5			
6			
7			
8			
9			
10			
11			
12			
합 계			

4. 공사개요

- 1) 위치 : 인천광역시 중구 신흥동3가 12-59외 2개소
- 2) 내용 : 건축물 등 지상의 일부 지장물 철거 및 쉽터조성
- 3) 범위 : 완전철거 / 석면철거 / 쉽터조성 / 부대공사

5. 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공사는 인천 중구청에서 시행하는 건축물 일부 철거공사로서 계약상대자는 공사 시방서와 관계법령, 규정, 지침 및 특수조건을 연계 검토한 후 감독원과 협의하여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나. 공사감독의 권한

1) 감독원은 본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수시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다음의 계약 관련 업무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가) 기술(작업)인력 및 장비 등 동원현황

나) 관련법령 준수여부 및 업무수행상태

다) 기타 확인이 필요한 사항

2) 감독원은 공사 품질확보를 위해 계약상대자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감독원과 협의하여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의 책임

1) 수급인은 관련규정 및 시방서, 작업지침 등을 완전히 숙지하여 시공현장 작업, 시공방법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완성하여야 하며 감독관으로부터 재시공, 공사 중지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에 대한 지시를 받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이 관련규정 및 시방서, 작업지침 등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민, 형사상 법적문제와 그로인한 발생한 비용 지불금액은 수급인이 책임진다.

3)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보고서라 할지라도, 수급인의 잘못으로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수급인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수급인은 준공 이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해 발주자의 수정·보완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급인 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민원해결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공사과정에서 제3자에게 손해를 가했을 경우와 작업도중 발생하는 사고, 손해에 대하여 보상 등 모든 책임을 다해야 한다.

5) 수급인이 감독원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요청, 이의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

- 6) 감독원의 각종 지시사항에 대해 이행여부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시정지시서 및 시정조치 결과보고서 작성)
- 7) 수급인은 본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관계자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감독원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내용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 8) 공사과정 및 성과가 부실하여 재시공을 요구할 경우, 수급인은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 부담으로 지불하여야 한다.
- 9) 수급인은 과업수행물량이 당초 계약물량을 초과한다고 판단될시, 즉시 공사를 중지하여야 하며 초과사유를 기재한 실정보고 후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처리하여야 한다.
- 10) 수급인은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석면관련 전문기관 또는 석면 전문가 등에게 관리 및 처리 등에 대한 자문을 구하여 적절하게 진행 될 수 있도록 필요한 대책을 수립 할 필요가 있다.
- 11) 수급인은 감독원이 현장대리인(관리감독자) 또는 채용한 작업근로자에 대하여 당해 공사업무 수행 또는 관리상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이의 교체를 요구한 때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승인 없이는 교체된 근로자를 당해 공사업무 수행 또는 관리를 위하여 다시 채용할 수 없다.
- 12) 수급인은 석면과 관련 학술과 기술이 풍부하고 법정교육 이수자를 관리감독자로 배치하여 관리감독자 업무내용을 수행 하도록 하여야 한다.
- 13) 수급인은 관리감독자에게 업무수행에 필요한 권한을 부여하고, 시설·장비·예산, 그 밖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 14) 지방서 및 특수조건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관련법 규정을 준수하여 수급인의 책임으로 면밀히 시공한다.

라. 착공신고서 등 제출

계약상대자는 작업지시일로부터 3일 이내에 착공신고서 등(2부)를 제출하여 연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착공신고서 등은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 1) 착공계
- 2) 현장대리인 선임계
- 3) 현장대리인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기술자격증 및 건강보험가입증명서 사본
- 4) 비계구조물 해체 면허
- 5) 직접시공계획서

- 6) 예정공정표
- 7) 공정별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 가) 인력은 지장물 철거공사 투입인력과 석면해체공사 투입인력을 각각 분리하여 작성하여야함
 - 나) 장비투입계획서는 민·형사상 책임을 담보할 수 있는 장비별 손해보험(대임, 대물 등) 가입증명서 등을 첨부하여야 함
- 8) 안전, 환경관리 계획서(사용계획서 별도)
- 9) 폐기물(건설, 지정 등) 분리배출 및 보관방법
- 10) 기타 발주자의 지정, 요구한 사항

마. 철거공사 전 작업준비

- 1) 철거공사 전 인·허가사항
 - 가) 철거공사 시행에 따른 각종 인·허가 사항(비산먼지 발생작업장 신고 등)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작성하고 감독원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 2) 주변상황의 파악 및 사전조치
 - 가) 공사수행 시 소음, 진동, 분진, 해체재의 비산, 낙하 등에 대한 문제점을 최소로 줄일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하며, 공사수행에 앞서 주변의 상황을 확인하고 주변상황에 적합한 작업을 하여야 한다.
 - 나) 부지 내에 매설된 가스, 수도관, 전기, 전화배선 등의 취지나 심도를 조사하여 해체공사 지장 여부를 확인 후 사전 조치한다.
 - 다) 철거되지 않고 보존되어야 할 기존 구조물은 깃발을 설치하거나 페인트를 칠하여 보호한다.
 - 라) 철거작업으로 기존 구조물의 안전성이 우려되는 부위는 버팀대, 버팀목 등의 방호조치를 강구한다.
 - 마) 각종관로의 매설부위는 위치를 알 수 있도록 깃대를 꽂거나 흰가루 등을 뿌려 표시한다.
- 3) 공사용 장비반입
 - 가) 계약상대자는 손해보험이 가입된 장비 중 감독원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장비를 공사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반입하여야 한다.
 - 나) 반입된 장비가 공사에 부적합하거나 감독원의 교체요구가 있을시 에는 추가 교체하여야 한다.
- 4) 건물 내의 인입되어 있는 전기, 전화, 가스, 하수도 등 주요배관설비에 대해 철거사실을 관계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5) 공사표지판

가) 표지판에는 공사명, 발주처, 공사감독자 및 건설업자와 주요하도급 건설업자의 명칭, 공사기간 등을 명시해야 한다.

나) 표지판은 현장에서 눈에 잘 띄는 위치에 설치해야 한다.

다) 현장에는 법규로 요구된 경우를 제외하고, 환경보전협회의 허가 없이 다른 표지판을 설치해서는 안된다.

6) 공사 중 현장 청소

가) 공사구역에는 폐자재, 부스러기 및 쓰레기 등이 없게 유지하고, 현장은 깨끗하고 정연한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

나) 현장에 가설 울타리 등을 설치 할 경우에는 설치 전에 폐기물 및 쓰레기는 제거해야 한다.

바. 철거공사 중 유의사항

1) 계약상대자는 철거 및 공사에 따른 기술자를 감독관 승인을 받은 수 현장에 상주토록 배치하며 보안 관리를 철저히 하여 관계자 이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철거공사 중에 발생한 건설폐기물 등은 선별 후 종류별로 분리 배출 하여야 하며, 건설폐기물처리업체와 상호 협조하여 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선별된 폐기물을 단기간이라도 보관해야할 경우 방진덮개를 덮어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도록 한다.

4) 철거작업은 계획되어 있는 모근 구조물을 남기지 않고 제거하여 시공하며 당해 부지의 지하에 존재하는 흙관, 플룸관, 전선 등 모든 지장물을 제거해야 한다.

5) 만약 철거시 구조물의 위험성이 있을 경우 대책을 강구하여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른다.

6) 철거작업은 동중이나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는 방법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7) 철거장비 및 지장물철거시 부득이하게 대인의 사유지를 침범할 경우에는 소유주로부터 사용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8) 철거작업으로 발생하는 도랑, 웅덩이, 구멍 등은 주변 지반높이까지 되메우기한 후 원지반과 동일한 밀도로 다져야 한다.

9) 철거공사 과정에서 일어나는 안전사고, 도로파손, 기타 타인의 재산상 손해 등

제반피해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가 보상 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 10) 계약상대자는 공사 중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발생요인을 점검해야 하며 민원발생시 즉시 감독권에게 보고하여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11) 철거작업시 소음, 진동, 비산먼지 등으로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환경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 12) 유해물질을 제거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에 따라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처리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기록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3) 우천 및 강풍 등 기상 악화 시 슬레이트, 텍스 등 지정폐기물 해체와 건축물 철거를 즉시 중단하여야 하며, 함수된 폐기물은 비닐포장, 상차 등을 중지하고 적정 보관 후, 자연건조 등을 거쳐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사. 철거마무리 작업

철거공사가 종료되면 다음과 같이 공사시 행한 각종 가설물의 철거나 복원 작업을 한다.

1) 가설물철거

- 가. 가설전기, 급배수, 위생설비 등을 철거하고 뒤처리를 하여야 한다.
- 나. 비계의 최종철거와 발판의 처리를 하여야 한다.
- 다. 각종 양중설비를 철거 반출 하여야 한다.
- 라. 가설건물을 철거하고 뒤처리 하여야 한다.
- 마. 각종 가설자재를 집적하여 반출 하여야 한다.
- 바. 가설 울타리를 철거 반출 하여야 한다.
- 사. 기타 철거와 관련된 부속재료를 반출 하여야 한다.

2) 복원작업 및 정리

- 가. 근접건물이나 공작물 등에 철거공사로 인한 영향부분이 있으면 모두 계약상대자의 비용으로 보수·복원공사 하여야 한다.
- 나. 공사구역 주변의 손상부분을 보수, 청소 하여야 한다
- 다. 전 현장의 부지정지 및 정리상태를 감독관에게 확인받아 승인 후 장비를 철수 할 수 있도록 한다.
- 라. 철거 및 폐기물 운반으로 인한 주변도로 및 현장 내 철거 및 폐기물 잔재는 인근 주민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청소 및 정리 후 감독관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아. 설계변경 승인요청

- 1) 설계변경은 발주처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승인을 득한 후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 2) 제출서류
 - 가. 변경요청 공문
 - 나. 변경 사유서
 - 다. 변경 총괄표, 내역서 및 산출근거
 - 라. 변경(안) 설계도면
 - 마. 기타 관련증빙자료(관련사진 등)

자. 철거공사의 준공

- 1) 제출서류
 - 가. 준공대장(공문, 준공계, 준공내역서, 준공금청구서)
 - 나.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완납증명서
 - 다.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등 납부확인서
 - 라. 사업장 국민연금보험료 월별 납부확인서
 - 마.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 바. 납세사실증명
 - 사. 지방세 납세증명서
 - 아. 산업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
 - 자. 환경보전비사용내역서
 - 차. 건축물 철거작업 사진대지
 - 카. 공사작업일보
 - 타. 기타 공사감독자가 요구하는 서류

차. 기록 작성 보고 및 관리

- 1) 현장대리인은 공사를 수행하는 동안 공사현장별 해체공사현황(당일처리실적, 익일처리계획, 장비 및 투입인력 등)을 기록한 공사일보를 작성하여 일일보고 하도록 하고 특이사항이 발생될 경우 수시보고 하도록 하여야 한다.
- 2) 현장대리인은 공사 착수 전, 공사 진행사항 및 완료사진 등을 촬영하여 감독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2 장 석 면 해 체 공 사

2.1 석면해체·제거작업의 기본조치사항

2.1.1 석면함유물질의 사전조사

(1) 목적

- 사업주는 석면함유가 의심되는 설비 또는 건축물을 해체·제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설비 또는 건축물내의 석면이 함유되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사전조사를 통하여 수시로 이루어 지는 해체, 제거, 보수, 리모델링 등과 같이 직접적으로 석면분진에 노출될 위험을 사전에 인지하고 대처하기 위함이다.

(2) 조사자

- 사전조사는 설비 또는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 또는 해체작업을 수행하는 사업주가 실시하여야 한다.

(3) 조사방법

- 건축도면, 설비제작도면 또는 자재 사용이력 등을 통해 석면 함유여부를 확인하는 방법
- 건축자재 제조업체의 제작사양 및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통해 석면함유를 확인하는 방법
- 석면슬레트, 천정텍스, 단열재(insulation) 등과 같이 외형 및 색깔 등을 이용하여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한 방법
- 위와 같이 관련자료 또는 육안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 석면분석이 가능한 기관에 분석을 의뢰하여 성분 및 함유량을 확인하는 방법

(4) 조사내용

- 석면이 함유된 설비 또는 건축물의 위치 및 분포
- 석면이 함유된 설비 또는 건축물의 종류 및 명칭
- 석면이 함유된 설비 또는 건축물의 범위(면적, 량 등)
- 석면이 함유된 설비 또는 건축물중 해체·제거되는 부위 등

(5) 조사결과 기록 및 보존

- 석면함유물질에 대한 사전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기록하고 관련 자료를 보존하여야 한다.
- 사전조사를 실시한 자는 해당 설비 또는 건축물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 판매 등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조사결과를 함께 이전하여야 한다.

2.1.2 석면해체·제거작업 계획수립

(1) 대상

- ◎ 사업주는 석면이 함유된 설비 또는 건축물을 해체하거나 제거하는 작업을 행할 때에는 석면으로 인한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석면해체·제거작업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석면해체·제거 작업계획에 포함될 내용

- ◎ 석면함유물질 사전조내용
- ◎ 석면해체·제거작업 공사기간 및 투입인력
- ◎ 석면해체·제거작업의 절차 및 방법
 - 사전조사결과 해체·제거할 석면함유물질별 해체·제거방법(사용하는 도구 등 장비목록, 작업순서 및 작업방법 등)
- ◎ 석면 비산방지 및 폐기방법
 - 해체·제거작업과정에 사용할 석면 비산방지방법(밀폐, 격리, 음압밀폐시스템, 습식작업, 진공청소 등)
 - 해체·제거작업과정에 사용할 석면 폐기방법(해체·제거된 석면함유물질, 잔재물·부스러기의 처리 및 폐기방법)
- ◎ 근로자 보호조치
 - 해체·제거작업자의 건강보호를 위한 보호의, 방진마스크 등 개인보호구와 위생설비 등 보호조치내용
- ◎ 기타사항
 - 석면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근로자에 대한 석면의 유해성 등에 대한 교육계획 등을 포함

(2) 작업계획의 주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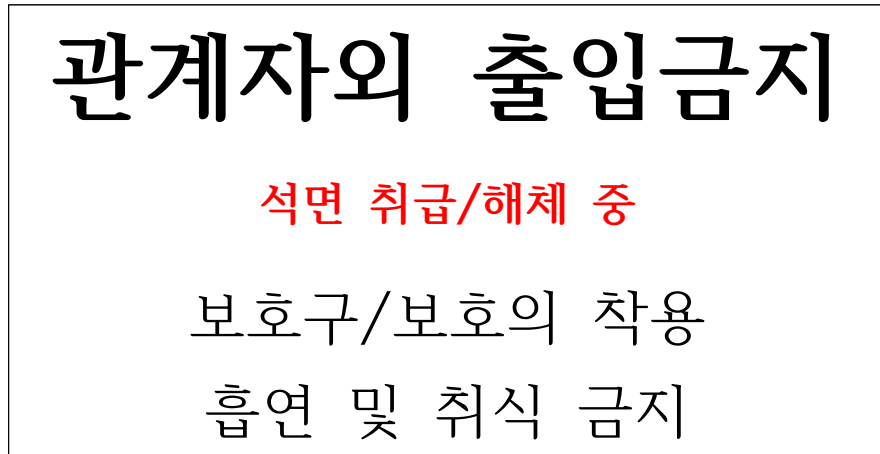
- ◎ 사업주는 석면해체·제거작업계획 수립 시에는 해체·제거작업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 사업주는 석면해체·제거작업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작업근로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 게시 또는 교육 등을 통하여 주시시켜야 한다.
- ◎ 사업주는 석면해체·제거작업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작업지역외 석면해체·제거작업으로 인해 영향을 받거나 동일 건물내 관련된 근로자에게 해체·제거작업 실시계획 등에 대해 주시시켜야 한다.

2.1.3 경고표지의 설치

◎ 사업주는 석면해체·제거작업을 행하는 장소에는 다음의 표지를 출입구에 게시하여야 한다.

석면취급/해체 작업장의 경고표기

(산업안전보건법 보건규칙 제 206조 제1항 및 제238조관련)



주) 1. 크기는 가로70센티미터, 세로 50센티미터이상

2. “관계가외 출입금지” 글자의 크기는 가로 8센티미터, 세로 10센티미터 이상

3. 그밖에 글자의 크기는 가로 6센티미터, 세로 6센티미터 이상

4. 글자는 흰색 바탕에 흑색, 다만 “석면 취급/해체 중” 글자는 적색

◎ 다만, 작업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실외이거나 출입구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2.1.4 개인보호구의 지급·착용

(1) 사업주는 석면해체·제거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작업조건에 적절한 방진 마스크, 보호의 및 보호장갑 등의 개인보호구를 작업근로자별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 방진마스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보호구 검정기준에 의한 1급 이상의 방진마스크 또는 송기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한다.

◎ 반면형의 방진마스크를 착용하는 경우에는 눈의 보호를 위해 고글형 보안경을 함께 착용하여야 한다.

(2) 사업주는 호흡용 보호구를 지급할 때에는 작업근로자에게 다음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기밀검사(fit-test)방법

● 보호구의 이상유무 검사방법

● 사용방법

● 유지관리방법

● 오염물 세척 및 제거방법

● 보호구의 사용제한

(3) 사업주는 보호의를 지급할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이 충족되어야 한다.

● 석면에 대해 불침투성 보호의를 지급하여야 한다.

● 보호의는 근로자의 전신을 덮을 수 있는 one-piece disposable coverall(허리, 손목, 목이 조이는 구조로 머리덮개가 부착된 일회용 보호의를 말함.)를 지급하여야한다.

● 폐기하기 전에 표면오염을 쉽게 세척할 수 있는 재질이어야 한다.

● 찢어지거나 손상된 보호의는 즉시 수선하거나 대체하여야한다.

(4) 사업주는 불침투성의 보호장갑 및 보호장화를 지급하여야 한다.

2.1.5 관계자의 출입금지 및 흡연 등의 금지

(1) 사업주는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고 작업수칙을 주지한 자 이외에는 석면해체·제거작업장소에 출입하게 하여서는 안된다.

(2) 사업주는 석면함유 설비 또는 건축물을 해체·제거하는 작업장에서 근로자가 담배를 피우거나 음식물을 먹지 아니하도록 하고 그 뜻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한다.

2.1.6 위생설비의 설치

(1) 사업주는 석면해체·제거 작업장소에 인근에 탈의실, 샤워실 및 작업복 갱의실 등의 위생설비를 설치하고 필요한 용품 및 용구를 비치하여야 한다.

(2) 사업주는 실내의 분무되 석면이나 석면이 함유된 보온재 또는 내화피복재의 해체·제거작업장소에 위생설비를 설치하는 때에는 다음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 위생설비의 설치순서는 탈의실 → 샤워실 →작업복 갱의실(작업장비 보관실) → 작업장소 순으로 인접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 각 실의 연결복도의 출입구는 분진의 확산방지를 위해 폴리에틸렌 재질의 커튼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샤워실은 온·냉수가 공급되어야 한다.

◎ 위생설비의 출입순서(작업전)



- 탈의실로 들어가 평상복을 벗고 보호의를 착용하고 호흡보호구를 검사한다.
- 샤워룸을 통해 장비실로 들어간다(샤워를 하지 않는다)
- 작업복 갱의실(장비실)에서 안전모, 장화 및 다른 장비를 착용한다.
- 작업장소로 들어간다.
- ◎ 위생설비의 출입순서(작업후)
 - 작업장소를 떠나기 전에 작업자는 눈에 보이는 석면분진 등을 물걸레 등으로 세척하거나 고성능 진공청소기로 제거한다.
 - 작업복 갱의실(장비실)로 들어가 일회용 보호의를 벗고 재사용할 도구 및 장비를 보관한다(호흡용 보호구는 계속 착용한다)
 - 샤워실로 들어가 호흡용 보호구를 착용한 채로 샤워하고 호흡용 보호구를 세척한다. 그 후 호흡용 보호구를 벗고 샤워를 계속 한다.
 - 샤워실을 나와 탈의실에서 평상복으로 갈아입은 후 나온다.
- (3) 기타 해체·제거작업, 옥외작업 또는 작업장소 입구와 연결하여 탈의실, 샤워실, 작업복 갱의실(장비실) 등의 위생설비를 설치하기에 현실적으로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별도 장소에 위생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 ◎ 위생설비는 작업장소에 직접 연결되는 구조가 가장 이상적이나 옥외작업 또는 건설업의 작업특성상 작업장소에 인접하여 설치하기에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에는 작업장소와 분리되어 있다 하더라도 적절한 장소에 위생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 ◎ 다만, 위생설비가 격리되어 설치하는 경우 작업자는 작업장을 떠날 때 작업장소내에서 진공청소기 등을 사용하여 작업복, 보호의 사용장비 등에 부착된 석면분진을 세척하여 이동 중 석면분진이 흩날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4) 사업주는 석면해체·제거작업 근로자가 착용했던 보호구 등은 작업복 갱의실에서 벗어 밀폐 용기에 넣어 보관토록 하고 오염을 제거하기 위한 세척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1.7 석면함유 잔재물 등의 처리

- (1) 사업주는 해체·제거된 석면이 손상되지 않았을 경우 가능한 한 빨리 비닐포장 등에 적절하게 밀봉한 후 석면임을 표기하여 폐기하여야 한다.
- (2) 사업주는 석면해체·제거작업 시 발생한 석면잔재물이나 석면 부스러기 등은 불침투성 용기 또는 비닐포대 등에 넣어 밀봉한 후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2.1.8 잔재물의 흘날림 방지

- (1) 사업주는 석면해체·제거작업에서 발생된 석면을 함유한 잔재물은 습식 또는 고성능필터가 장착된 진공청소기로 청소하는 등 석면이 흘날리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2) 청소시 석면분진을 제거하기 위하여 압축공기를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2.1.9 석면해체·제거작업 시 금기사항

- (1) 분진포집장치가 장착되지 않은 고속 절삭기스크 톱의 사용
- (2) 석면 및 석면함유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사용하는 압축공기
- (3) 석면함유물질의 분진 및 부스러기 등을 건식으로 빗자루 등을 이용하여 청소하는 작업

2.2 석면해체·제거작업 방법

2.2.1 사전조치사항

- (1) 공급전원을 차단하고(기계공조설비 작동금지), 공기흡입구 및 배출구를 밀봉한다.
- (2) 비닐시트로 개구부(문, 창문)을 밀봉하고, 지붕 및 외벽마감재를 작업하는 경우에는 건물 높이 이상의 방진시트를 설치하여 석면분진의 외부환경배출을 억제해야 한다.
- (3) 사용장비의 전원은 작업장 밖의 전원을 임시로 연결하여 사용한다.
- (4) 작업구역 내에서는 음식물 섭취 및 흡연은 불가능하며, 비닐시트는 두께 0.15mm의 폴리에틸렌 필름을 사용한다.

2.2.2 지붕재 및 외벽 마감재 - 예) 파형 슬레이트

- (1) 흑한기, 강풍, 우천시 작업불가
- (2) 건물외벽을 따라 폭 3m의 비닐시트를 깔아야 한다.
- (3) 석면물질에 습윤제(습윤제의 경우 물의 표면장력을 감소시키기 위해 첨가하는 것으로 물질 내로 투과하려는 물의 능력을 증가시키고 물질내 구석진 곳까지 습윤화하는데 효과적이므로 물과 함께 사용하는 것이 좋다. 이러한 수정수(amended water)를 만들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식기세척제를 사용할 수 있음. 20리터의 물에 1컵 정도의 세척제를 첨가하여 만든다.) 등을 분사한다.
- (4) 석면물질을 가능한 파쇄되지 않는 상태로 제거하여 지정장소에 운반한다.
- (5) 제거된 석면물질은 비닐시트로 이중포장하며, 테이프로 밀봉한 후 석면표지를 부착한다.
- (6) 1일 작업을 마친 후 건물주위의 비닐시트를 HEPA필터 진공청소기로 청소해야 하며, 2중으로 된 비닐주머니에 사용한 비닐시트를 넣고 밀봉, 처리한다.

2.2.3 내부벽 마감재 - 예) 석면시멘트제품

- (1) 실내 환기구, 개구부, 조명기구 등은 비닐시트로 밀봉, 처리한다.
- (2) 바닥 위에 2중 비닐시트를 설치한다.
- (3) 공기정화기, 부압제진장치 등을 설치한다.
- (4) 제거하는 동안 석면분진이 날리지 않도록 습윤제 등을 분사한다.
- (5) 도구 및 장비를 이용하여 석면시멘트제품을 해체한다.
- (6) 가능한 파쇄되지 않는 상태로 석면시멘트제품을 제거해야 한다.
- (7) 2중의 비닐시트로 포장, 테이프로 밀봉, 처리한 후에 석면표지를 부착한다.
- (8) HEPA필터 진공청소기로 실내를 청소하고 2중으로 된 비닐주머니에 사용한 비닐시트를 넣고 밀봉, 처리한다.

2.2.4 천장재

- (1) 건물내 공간을 구획하고 있는 벽체가 지붕 또는 상층 바닥 Slab까지 연속되지 않는 경우 작업대상구역의 천장 속 공간을 비닐시트로 구획하여 밀봉한 후 천장의 조명기구를 사전에 제거해야 한다.
- (2) 벽, 바닥에 2중의 비닐시트를 부착한 후 공기정화기를 설치한다.
- (3) 천장재에 침투제를 분사시킬 후 제거하며, 제거된 자재 뒷면에 침투제를 분사한다.
- (4) 2중 비닐시트로 포장한 후 테이프로 밀봉하여 석면표지를 부착한다.
- (5) 달천자의 천장 channel이나 지붕틀의 먼지는 젖은 스폰지나 걸레로 제거한다.
- (6) HEPA필터 진공청소기로 실내를 청소하고, 2중으로 된 비닐주머니에 사용한 비닐시트를 넣고 밀봉, 처리한다.

2.2.5 바닥마감재 - 석면바닥타일

- (1) 실내환기구, 개구부, 조명기구 등을 비닐시트로 밀봉, 처리한다.
- (2) 실내벽 둘레에 1.2m높이의 비닐시트를 부착한다.
- (3) 바닥에 침투제를 분사한 후 타일을 제거한다.
- (4) 2중 비닐주머니에 제거된 타일을 넣고 밀봉, 처리한다.
- (5) HEPA필터 진공청소기로 바닥을 청소한다.
- (6) 2중 비닐주머니에 사용한 비닐시트를 넣고 밀봉, 처리한다.